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산지복구비 추가 미예치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내 용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비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산업의 채석 용도의 산지전용 허가기간(2016. 7. 22.~2017. 12. 31.)이 1년 이상이므로 복구비를 추가 예치토록 하여야 하나 2016년에 예치한 복구비 5,765,850,000원과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22호, 2017. 3. 6.)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5,930,755,000원과의 차액 164,905,000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의 채광 용도의 산지전용 허가기간(2015. 8. 28.~2017. 11. 30.)이 1년 이상이므로 복구비를 추가 예치토록 하여야 하나 2015년에 예치한 복구비 27,284,000원과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22호, 2017. 3. 6.)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30,004,000원과의 차액 2,720,000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아래 [표]와 같이 ○○개발(주)의 채석 용도의 산지전용 허가기간(2012. 4. 23.~2018. 12. 31.)이 1년 이상이므로 복구비를 추가 예치토록 하여야 하나 2017년에 예치한 복구비 1,719,250,000원과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22호, 2017. 3. 6.)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1,737,776,000원과의 차액 18,526,000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태안군은 아래 [표]와 같이 ○○○외 1 토사 용도의 산지전용 등 총 4건의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복구비를 추가 예치토록 하여야 하나 2016~2017년에 예치한 복구비 1,608,446,000원과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7-22호, 2017. 3. 6.)에 따라 산정한 복구비 1,738,008,000원과의 차액 129,562,000원을 추가로 예치하지 않고 있다.

[표] 산지복구비 예치금 재산정 명세

기관	소재지	허가현황				복구비 현황		정당복구비 (천원)	미예치액 (천원)
		기간	면적 (㎡)	수허가자	용도	예치액 (천원)	예치일		
	합계					9,120,830		9,436,543	315,713
	소계					5,765,850		5,930,755	164,905
아산시	○○면○○리 산00-0	2016. 7.22. ~2017. 12.31.	97,236	○○산업	채석	5,765,850	2016. 7.25.	5,930,755	164,905

기관	소재지	허 가 현 황				복구비 현황		정당복구비 (천원)	미예치액 (천원)
		기 간	면 적 (㎡)	수허가자	용도	예치액 (천원)	예치일		
서산시	소 계					27,284		30,004	2,720
	○○읍 ○○리 산0-00	2015. 8.28. ~2017. 11.30.	1,150	○○○	채광	27,284	2015. 9. 10.	30,004	2,720
당진시	소 계					1,719,250		1,737,776	18,526
	○○면 ○○○리 산00외 0	2012. 4.23. ~2018. 12.31.	65,600	○○개발 (주)	채석	1,719,250	2017. 1.25.	1,737,776	18,526
태안군	소 계					1,608,446		1,738,008	129,562
	○○면 ○리 산00외 0	2016. 5. 3. ~2018. 3.31.	14,302	○ ○ ○ 외 1	토사	417,967	2016. 5.12.	465,026	47,059
	○○면 ○○리 산000-0	2016. 10.20. ~2017. 12.30.	19,209	○○산업 개발(주)	토사	477,789	2017. 1. 19.	510,661	32,872
	○○면 ○○리 산00-00	2016. 10.26. ~2018. 11.30.	19,438	○○○	토사	483,106	2016.12. 12.	516,749	33,643
	○○면 ○○리 000-00외 0	2016.11. 3. ~2018. 12.31.	9,412	○○○○○ ○ 공 사 ○○○○○ 지사	토사	229,584	2016.11. 30.	245,572	15,988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아산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태안군수는

[시정] 미예치된 복구비 315,713,000원(아산시장 164,905,000원, 서산시장 2,720,000원, 당진시 18,526,000원, 태안군 129,562,000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